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46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민병덕·권칠승·서영교

김한규 · 정진욱 · 이용우

이강일 · 김태선 · 박홍배

윤후덕 · 송기헌 · 박정현

강준현 · 정준호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가상자산 실명거래)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가상자산거래등(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정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가상자산거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은 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정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이용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⑥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 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			
	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			
	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			
	<u> 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u>			
	<u>다.</u>			
<u> <신 설></u>	제12조의2(가상자산 실명거래)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실			
	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			
	로 가상자산거래등(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u>다)을 하여야 한다.</u>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			
	정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			
	<u>다.</u>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가상자산거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 원·대리인은 제3항에 따른 가 상자산거래등을 알선하거나 중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정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이용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⑥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 항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제19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u>③</u>·<u>④</u> (생 략)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⑥ (생략)

있다.

8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